

## 결혼이민자가족돌보미, 산모·신생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대폭 높인다.

-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강화 -

□ 기획예산처는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강화방안 마련, '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함.

○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훈련과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요를 확대시키고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

○ 이에 교육훈련상 문제점 및 서비스의 질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던 방문도우미등 11개 주요사업에 대해 직무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확충하고, 훈련과정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음.

○ 금번 개선대책 시행으로 인하여 '08년도 서비스 수혜대상인 약 688천명이 앞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

□ 또한,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중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훈련기간중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임.

○ 이에 따라 18,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이 교육훈련기간중 (50시간~120시간)에 25만원에서 90만원의 수당지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임

□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공급체계 개선이 수요확대(시장 형성)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조사,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교육훈련 개선대책을 마련,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.

① 서비스 대상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간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 추진

- 「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」(농림부, 여성가족부)의 경우 교육 시간을 16시간에서 50시간으로 강화하고, 아동양육, 자녀학습, 가족상담 내용을 추가

- 「산모·신생아도우미」(보건복지부)는 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, 신생아관리, 수유, 마사지, 산후조리 및 실기교육 추가

② 교육훈련 미이수자 및 교육평가지 미달자는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 (돌봄서비스 공통)

③ 교육기관별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하던 교육훈련 강사는 사업별 강사 자격기준을 설정으로 표준화

-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우수강사풀 운영, 공개 강좌 및 학생·학부모의 사후평가 실시

④ 아울러 교육훈련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최저생계비 150% 미만인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교육훈련 기간을 사업참여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획임.

⑤ 한편, 해당부처가 '07.12월까지 이와 같은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토록 할 예정임

□ 또한 전문성과 수요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자격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노인수발보험의 시행('08.7월)에 맞추어 노인수발 전문인력으로 '요양보호사' 자격 신설('08.2월)

○ 재가복지 직종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등의 직업능력표준을 '07년말까지 개발하여 자격화 및 교육훈련에 활용(한국산업인력공단)

□ 기획예산처는 이번 교육훈련 개선대책을 토대로 사회서비스 인력의 양성과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·개선하여 「사회서비스의 질 제고→ 서비스 수요확대→ 시장형성 →안정적 일자리 증대」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,

○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점차 정부재정지원을 줄이고, 시장에서 수익창출 구조를 갖추고 경쟁력을 갖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·추진할 계획이다.

## 교육훈련 제도 개선안

### □ 여성가족부 소관

- **아이돌보미** ('07년 : 50억원, 참여자 991명, 수혜자 8,000명, '08년 : 56억원, 참여자 2,049명, 수혜자 15,000명)
  - 참여자격 : 65세 미만 여성으로 교육과정 이수자
  - 업무내용 : 양육자의 질병, 야근 등으로 일시적 돌봄수요 가정에 도우미 파견 돌봄서비스 제공

항목	현행	개선방향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수행기관에서 교육병행 -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·보급하여 표준화	○ 현행 체제 유지	
커리큘럼	○ 교육시간(양성 40시간, 보수 월2시간)	○ 교육시간 확대(40시간 → 50시간 이상) 및 내실화 방안으로 개선 - 신생아에 대한 교육보강 및 실습교육 추가 - 교과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내용 보완 - 보수교육과정 개발 및 수료 의무화 추진 ○ 교과운영실태 점검 강화로 변칙 운영 방지	- 보수교육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('07하반기) - 교육시간 및 커리큘럼 개선 시달('08년 시행)
강사기준	○ 강사의 자격기준 없음	○ 아동 및 복지관련학과, 실무활동분야, 활동경력 등 자격기준 설정 ○ 강사풀을 마련하여 제공 ○ 강사의 사후관리 강화 - 강의평가서 작성,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- 강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아동양육 이해도 제고	- 강사기준 및 사후관리 ('08년 시행지침 마련)
교육과정 평가	○ 사업기관별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및 내용 보완	○ 현행 체제 유지	- 현행 체제 유지
수료생 평가 및 사후관리	○ 출석률 80% 이상자에 수료증 발급	○ 실기 및 활동 내용 등 평가로 수료여부 결정 - 평가결과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추가교육 등 개선	- '08년 지침시부터 적용

○ **결혼이민자가족 지원** ('07년 : 38억원, 참여자 508명, 수혜자 1,070명, '08년 : 182억원, 참여자 2,320명, 수혜자 9,000명)

- 참여자격 :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전직교사, 농협직원, 결혼이민자 중 적격자 선발  
\* 여가부는 교육기간중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나 농림부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교육기간중 수당지급
- 업무내용 :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학습 및 양육지원,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

항목	현행	개선방향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 - 보수교육은 중앙센터에서 실무자 교육을 통한 전달교육(표준교재 개발·보급) * 농림부는 한국어세계화재단에 위탁 실시	○ 현행 체제 유지	- 현행 체제 유지
커리큘럼	○ 양성교육시간을 <b>16시간</b> , 보수교육 1회 * 농림부 결혼이민자는 30시간 및 보수교육 2회 실시	○ 양성교육을 <b>50시간</b> 으로 확대 및 보수교육(2회 각 10시간) 실시 의무화 ○ 교육내용 개선 - <b>이동양육도우미</b> 는 아동양육, 자녀학습, 출산 전·후지원, 가족상담 - <b>한글교육도우미</b> 는 한국어 교육, 가족상담 ○ 서비스 개시전 전문상담을 통해 수요자 적합형 서비스 제공	- 교육시간 및 커리큘럼 개선 시달('08년 시행)
강사기준	○ 강사 자격기준 없음	○ 관련학과, 실무활동분야, 활동경력 등을 요건으로 강사 자격기준 설정 ○ 강사풀을 마련하여 사업기관에 제공 ○ 강의평가서 작성,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간담회를 통해 이동양육 이해도 제고	- 강사기준 및 사후관리 ('08년 시행지침 마련)
교육과정 평가	○ 매 교육수료후 교육생 대상 <b>만족도 조사</b> - 조사결과 문제점을 보완 추진	○ 현행 체제 유지	- '08년 시행지침 마련 시행
수료생 평가 및 사후관리	○ 출석률 100% 이상자에 수료증 발급	○ 출석률 <b>80%이상자</b> 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결과를 수료 반영 ○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활동실적 평가 실시	- '08년 시행지침 마련 시행

## □ 보건복지부 소관

○ 노인돌보미('07년 : 322억원, 참여자 4,683명, 수혜자 25,000명, '08년 : 276억원, 참여자 4,119명, 수혜자 16,000명)

- 참여자격 : 제한없음(신체 건강한 자)

- 업무내용 :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월 27시간(1회 3시간씩 9회)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
항목	현행	개선방향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가정봉사원교육원 및 가사간병교육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·운영	○ 현행 체제 유지	- 현행 체제 유지
커리큘럼	○ 기본교육시간으로 120시간 및 보수교육 30시간 실시 - 이론 50, 실시 30, 실습 40시간 - 커리큘럼은 복지부가 제공하고 교재는 교육기관이 자체 제작하여 활용	○ 교육시간은 현행 유지 ○ 신체수발, 일상생활지원, 질환의 이해 및 의료기구 활용법 등 교육 - 노인특성에 맞는 치매·중풍 등 거동 불편에 대한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지원 중심으로 편성	- 현행 체제 유지
강사기준	○ 표준화된 자격기준없이 교육기관별로 자체 결정	○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강사자격기준 설정 - 사회복지, 보건분야 등 전문가 및 경력자, 자격증소지자 등	- '08년부터 시행(사업지침 반영)
교육훈련과정 평가	○ 일부기관에서만 수료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	○ 교육기관에서 수료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의무화	- '08년부터 시행(사업지침 반영)
수료생 평가	○ 평가 미실시	○ 수료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지침시달 - 일정수준 미달자는 보수교육 실시 등 보완 ○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및 교육 미이수자 사업참여 제한	- '08년부터 시행(사업지침 반영)

○ 가사간병도우미 ('07년 : 739억원, 참여자 10,833명, 수혜자 45,000명, '08년 : 596억원, 참여자 10,833명, 수혜자 45,000명)

- 참여자격 : 저소득층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 이하인 자
- 업무내용 : 저소득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에게 무료 간병·가사지원서비스 제공

항목	현행	개선방향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5개 광역권의 가사간병교육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 - 중앙, 충청, 호남, 영남 북부, 영남 남부	○ 현행 체제 유지	-현행 체제 유지
커리큘럼	○ 기본 양성과정 : 120시간 교육 - 이론 50시간, 실기 30시간, 현장실습 40시간 ○ 전문과정 : 기본과정이수자 대상 치매·중풍 30시간, 호스피스 24시간 추가교육 ○ 교육내용 : 소양, 신체 수발, 가사지원 및 기초의학 등	○ 현행 체제 유지 ○ 교육수료생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재내용 개정	-현행 체제 유지 -모니터링을 통한 교재내용 보완은 '08년부터 시행
강사기준	○ 강사의 자격기준 설정 위축기준 마련 시행중 - 의학, 간호, 사회복지, 가정관리 분야 교수 및 자격자 - 유경력 간병사 및 강의 유경험자 등	○ 현행 체제 유지	-현행 체제 유지
교육훈련기관 평가	○ 수료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교재, 강사, 환경 개선에 활용	○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여 문제점 개선 - 교육환경 개선, 교재내용 개정, 강사 교체 등	-'08년부터 매 교육시마다 시행
수료생 평가	○ 114시간 이수자에게 이수증을 수여하고, 교육기관별로 현장실습 및 실기교육 시 자체 평가 실시	○ 현장실습 및 실기교육 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 미달자는 보완교육 실시 의무화 ○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후 만족도가 미흡한 부분은 개선 추진(수행기관)	-'08년부터 시행

○ 산모·신생아도우미('07년 : 151억원, 참여자 1,418명, 수혜자 37,000명, '08년 : 187억원, 참여자 1,672명, 수혜자 43,000명)

- 참여자격 : 제한없음(신체 건강한 자)

- 업무내용 : 저소득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2주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
항목	현행	개선방안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전국 45개 사업수행기관이 자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	○ 현행 사업수행기관별 교육체제를 유지하되 사업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지정체로 운영	'08년부터 시행
커리큘럼	○ 양성교육시간 40시간 운영 - 표준화된 커리큘럼 없이 교육기관에서 자체 커리큘럼 및 교재 제작 교육실시	○ 양성교육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용 보완 - 친철교육, 신생아관리, 수유, 마사지, 산후조리, 실기교육 분야 추가	-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 후 '08년부터 시행
강사기준	○ 강사자격 기준없이 교육기관이 자체 선정	○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회복지, 보건분야 등 전문가 및 경력자, 자격증소지자 등 대상으로 기준 설정	-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 후 '08년부터 시행
교육훈련기관 평가	○ 일부기관만 수료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	○ 수료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전 교육기관이 실시토록 의무화	'08년부터 시행(사업지침 반영)
수료생 평가	○ 평가기준 없음	○ 수료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수준 미달자는 보수교육 실시 등 보완 -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및 교육 미이수자 사업참여 제한	'08년부터 시행(사업지침 반영)

○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('07년: 300억원 참여자 11,000명 수혜자 16,000명 '08년: 671억원 참여자 10,000명 수혜자 20,000명)

- 참여자격 : 만 18세이상 65세 미만자로 제한없음

- 업무내용 :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등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

항목	현행	개선방향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시도별로 2개의 교육기관을 공모·선정 - 수행기관은 교육기관으로 신청 불가(3개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는 가능)	○ 현행 체제 유지	- 현행 체제 유지
커리큘럼	○ 양성교육 40시간, 보수교육 20시간 교육 -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20시간 교육실시	○ 교육시간 확대보다 <b>내실화에</b> 중점을 두고 '07년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하여 교육체계 마련 - 수행기관 자체교육 20시간과 보수교육 20시간은 매 뉴얼 및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내실화 추진 -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시 사업을 간병서비스 까지 포함할 경우 교육시간 확대 검토 ○ 장기과제로 장애유형별·서비스 유형별 활동보조 서비스 교육 방안도 검토	- '07 하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여 '08년부터 시행 - 장애유형별·서비스 유형별 활동보조서비스 교육 방안은 '08년 이후 추진
강사기준	○ 강사기준 없이 교육기관 지정시 강사진 구성현황을 심사	○ 교육기관별로 다양한 강사기준을 해당분야 전문가, 실무경력자,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표준화 추진	- '08년 사업지침에 반영
교육훈련기관 평가	○ 교육기관 지정시 자체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을 심사기준을 활용	○ 일부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제도를 전 기관으로 확대	- '08년 사업지침에 반영
수료생 평가 등 사후관리	○ 교육기관 지정시 자체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을 심사기준을 활용	○ 수료요건 설정 및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- 출결사항, 평가결과 가이드라인 설정 추진 - 교육훈련 미이수자 참여제한 추진	- '08년 사업지침에 반영

○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('07년: 236억원 참여자 7,200명 수혜자 205,000명 '08년: 384억원 참여자 6,600명 수혜자 145,000명)

- 참여자격 : 65세미만 신체건강자로 제한없음

- 업무내용 :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, 안전확인, 필요서비스 연계활동 지원

항목	현행	개선방향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현행 사업수행기관이 자체교육 실시	○ '07.6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안 마련 ○ 단기적으로는 양적으로 교육시간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을 확충·보완하는 방안으로 개선 - 교과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- 교육생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참여 제한기준 설정 등 ○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 추진	○ '07년 사업수행 후 평가를 실시하여 '08년도 개선안 마련
커리큘럼	○ 양성교육 50시간과 보수교육 6시간 - 커리큘럼 및 교육교재는 복지부가 제작 배포		
강사기준	○ 별도의 자격기준 미설정		
교육훈련기관 평가	○ 평가시스템 없음		
수료생 평가 및 사후관리	○ 평가시스템 없음 ○ 교육시간 50시간 이수시 이수증 수여		

## □ 교육인적자원부 소관

- **방과후학교 교사**(’07년 : 610억원, 참여자 10,335명, 수혜자 30만명, ’08년 : 지방이전, 참여자 14,286명, 수혜자 39만명)
  - 참여자격 : 제한없으나 학교운영위가 심사 선발
  - 업무내용 : 방과후 학습지도

항목	개선방향	개선방향	추진일정
강사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격기준 없음</li> <li>○ 학교별 운영위원회 심의로 강사 자율 선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 자격기준 없이 현 체제 유지, 지역특성 및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청 및 학교별로 결정</li> </ul>	
강사채용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청 단위 외부강사 관리규정 마련 시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류 간소화 등 채용과정의 애로점 해소</li> </ul> </li> <li>○ 학교장과 강사 개인간의 계약으로 체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강사료는 강의시간 및 학생수에 비례</li> </ul> </li> <li>○ 강사의 질관리 방안 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강사연수 실시</li> <li>- 교육청별 우수강사풀 구성 활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과후 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 및 지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한 강사풀 구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무조건을 일정기간 공시하여 강사 진입을 용이하게 개선하고 우수강사 확보</li> </ul> </li> <li>○ 강사 공개 모집 및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심의토록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별 강사선정위를 구성 공개강의를 통한 평가실시 권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시스템 구축은 ’07년부터 시행</li> <li>- 채용과정 및 관리체계는 ’08년부터 시행</li> </ul>
강사관리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위 학교별 강사선정·평가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 단위로 시범수업 및 학생·학부모 대상 만족도 평가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○ 농산어촌 우수강사 확보곤란 및 도시는 학교와 강사간 연결체제 미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어민 강사 확보 곤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생, 학부모 대상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 및 공개강의 실시</li> <li>○ 교육청별 추천강사 인증제 실시 및 강사풀 확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공유로 양질의 강사 확보 유도</li> </ul> </li> <li>○ 교육청내 외부강사 고충처리 및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’08년부터 시행</li> </ul>
교육훈련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부분의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강사 연수 실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소2시간 ~ 최대30시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국규모의 보수교육 제도화보다 시·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교육청 단위로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실시토록 권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별, 지역별, 참여프로그램 내용별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’08년부터 시행</li> </ul>
원어민 및 농산어촌 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산어촌 원어민 강사 확보 곤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어민 강사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복지부 제도를 활용한 지역 순회강사 확보 등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’08년부터 강사수급방안 마련 추진</li> </ul>

## □ 청소년위원회 소관

- 방과후아카데미 강사 ('07년 : 120억원, 참여자 900명, 수혜자 6,310명, '08년 : 158억원, 참여자 1,200명, 수혜자 8,400명)
  - 참여자격 : 관련학과로 제한없음
  - 업무내용 : 저소득, 맞벌이,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학교수업 후 학습능력 배양 및 복지·보호를 통한 건전성장 지원

항목	현행	개선방향	추진일정
교육훈련기관 선정	○ 교육훈련 미실시	○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운영 - 공모 또는 지정에 의해 위탁교육 실시	-'07.11 유관기관 협의 -'07.12 '08년 기본지침 시달시 시행내용 사전공지 -예산, 교육기관 확보 등 준비 후 '09년부터 시행
커리큘럼	○ 교육훈련 미실시	○ 청소년위가 교육내용과 지침을 제시하여 12시간 내외로 교육실시 - 기본교육(6시간) : 아카데미운영 기본철학과 사업지침 이해 - 소양교육(6시간) : 특성·전문화 역량배양을 위한 주제별 교육(청소년미디어활용, 청소년 이해 및 독서지도)	
강사기준	○ 교육훈련 미실시	○ 청소년학과 교수, 방과후활동 전문가	
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및 결과반영	○ 교육훈련 미실시	○ 사전 설문조사 및 대상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훈련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	
수료생 평가 및 사후관리	○ 교육훈련 미실시	○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운영지침 마련 -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3년간 강사활동 유지 및 미이수자 참여제한 - 기준미달자 재교육 및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- 유자격자(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)는 교육훈련 면제	